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구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년 월 일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2. 보고의 배경 및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2.4.15)되면서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을 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 시 보고하도록 법적의무화 되었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계획의 범위

- 위 치 : 구미시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내 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4. 용어의 정의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 (개설)되지 않은 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
- 단계별 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집행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수립한 계획(1~3년:1단계, 4~5년:2-1단계, 6년 이후:2-2단계)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총괄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성비(%)	
									개소	면적
합계	4,767	64,005,682	3,404	44,538,038	1,363	19,467,644	580	16,554,379	100.0	100.0
비율(%)	100.0	100.0	71.4	69.6	28.6	30.4	12.2	25.9	-	-
교통시설	3,720	20,498,387	2,575	17,283,466	1,145	3,214,921	495	1,931,907	85.4	11.7
공간시설	701	21,562,416	497	7,059,833	204	14,502,583	76	13,121,661	13.1	79.2
유통 및 공급시설	90	802,033	89	771,191	1	30,842	-	-	-	-
공공문화체육시설	169	7,193,353	162	7,098,921	7	94,432	6	79,396	1.0	0.5
방재시설	48	12,037,463	42	10,412,597	6	1,624,866	3	1,421,415	0.5	8.6
보건위생시설	6	512,051	6	512,051	-	-	-	-	-	-
환경기초시설	33	1,399,978	33	1,399,978	-	-	-	-	-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1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구성비(%)	
									개소	면적
2018년도	4,765	63,926,682	3,371	40,841,699	1,394	23,084,983	583	19,432,776	100.0	100.0
도로	3,553	19,759,118	2,440	14,334,443	1,113	5,424,675	491	3,771,730	84.2	19.4
공원	293	16,527,219	188	2,121,152	105	14,406,067	43	12,810,122	7.4	65.9
녹지	368	3,463,400	281	2,509,449	87	953,951	25	830,943	4.3	4.3
기타	551	24,176,945	462	21,876,655	89	2,300,290	24	2,019,981	4.1	10.4
2019년도	4,767	64,005,682	3,404	44,538,038	1,363	19,467,644	580	16,554,379	100.0	100.0
도로	3,556	19,773,512	2,467	16,643,121	1,089	3,130,391	488	1,899,278	84.1	11.5
공원	293	16,524,139	186	2,885,873	107	13,638,266	45	12,365,651	7.8	74.7
녹지	369	3,455,428	281	2,664,029	88	791,400	28	685,381	4.8	4.1
기타	549	24,252,603	470	22,345,016	79	1,907,587	19	1,604,069	3.3	9.7
증·감	2	79,000	33	3,696,339	▽31	▽3,617,340	▽3	▽2,878,398		

※ 국가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민간개발) 집행으로 분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 현황

구분	실효대상시설 (2020.07.01.)		집행시설		실효시설		비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397	13,738,746.8	56	2,242,934.8	341	11,495,812	
도로	333	779,994.0	40	231,862.0	293	548,132.0	
공원	32	10,748,599	8	1,579,717.0	24	9,168,882.0	
녹지	22	663,269.8	7	428,006.8	15	235,263.0	
기타	10	1,546,884	1	3,349.0	9	1,543,535	

6. 단계별집행계획 (변경)수립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시설 포함) 1,363개소 중 부서협의를 통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02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 금회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수립

구분	계		단계별집행계획						비고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0~2022)		(2023~2024)		(2025년 이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합계	1,027	9,549,992	39	3,881,071	113	246,948	875	5,421,973	
		1,867,619		530,299		110,568		1,226,752	
도로	803	2,588,863	20	89,020	112	169,325	671	2,330,518	
		991,208		51,227		101,812		838,169	
공원	84	6,240,689	9	3,351,022	1	77,623	74	2,812,044	
		680,157		360,263		8,756		311,138	
녹지	72	554,259	8	432,100	-	-	64	122,159	
		143,474		116,816		-		26,658	
기타	68	166,181	2	8,929	-	-	66	157,252	
		52,780		1,993		-		50,7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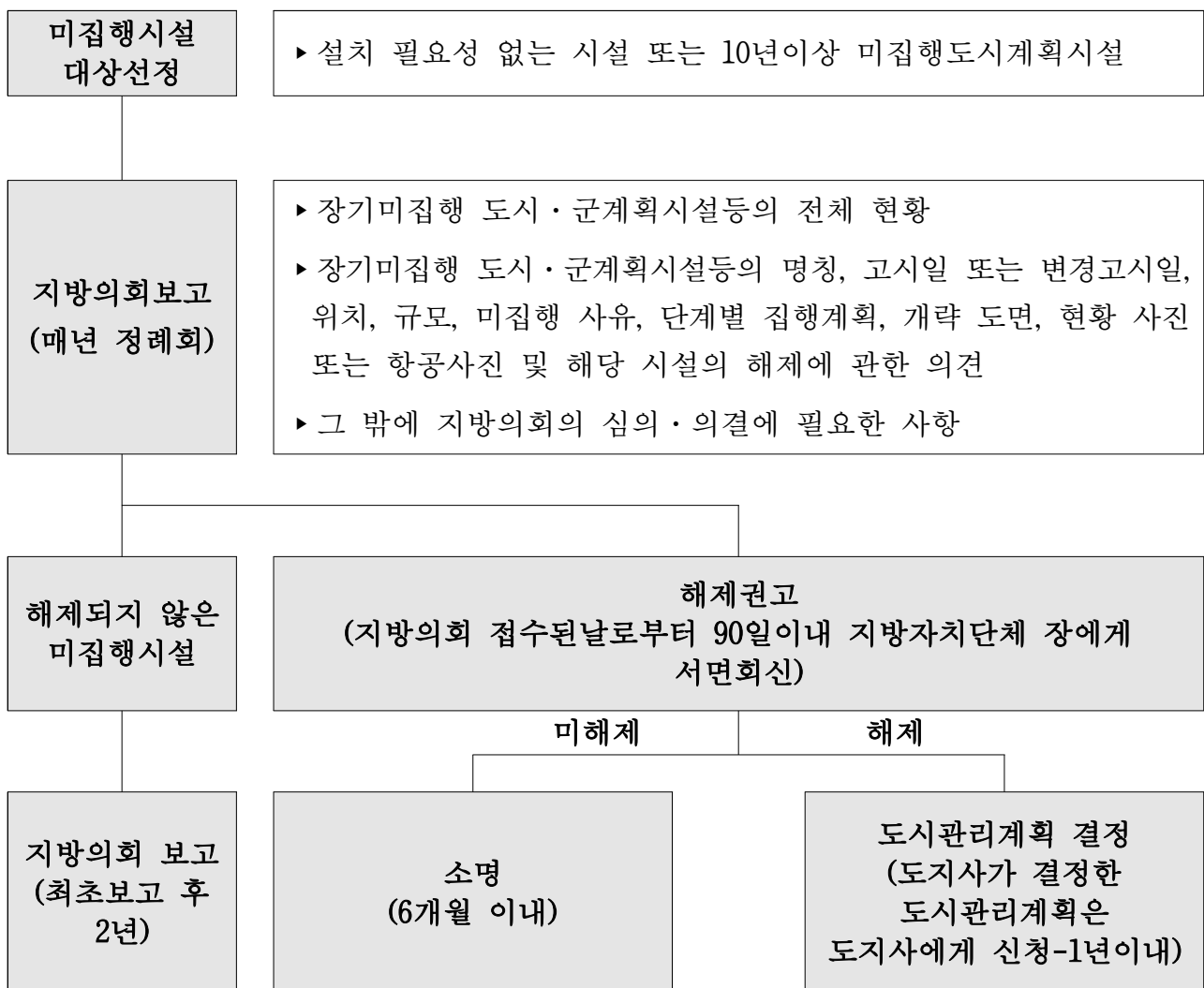
○ 이전 단계별 집행계획 (2019.1.16.)

구분	계		단계별집행계획						비고
			1단계		2-1단계		2-2단계		
			(2020~2022)		(2023~2024)		(2025년 이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합계	1,362	13,491,392	408	7,223,681	4	411,361	950	5,856,350	
		2,332,786		1,078,179		22,662		1,231,945	
도로	1,113	5,424,675	366	2,655,342	3	333,738	744	2,435,595	
		1,429,077		572,110		14,073		842,894	
공원	81	5,162,992	6	1,949,995	1	77,623	74	3,135,374	
		530,641		208,664		8,589		313,388	
녹지	86	728,587	22	599,608	-	-	64	128,979	
		162,461		129,821		-		32,640	
기타	82	2,175,138	14	2,018,736	-	-	68	156,402	
		210,607		167,584		-		43,023	

7. 추진경위

- 2016 ~ 201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시설별 대장작성
- 2018. 01~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검토
- 2019. 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검토 용역 착수
- 2019. 0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부서 검토
- 2019. 0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회의(1차, 부시장주재)
- 2019. 0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회의(2차, 부시장주재)
- 2019. 10 :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우선순위 분류
- 2019.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회보고

8. 행정절차



9. 첨부자료

① 구미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세부 시설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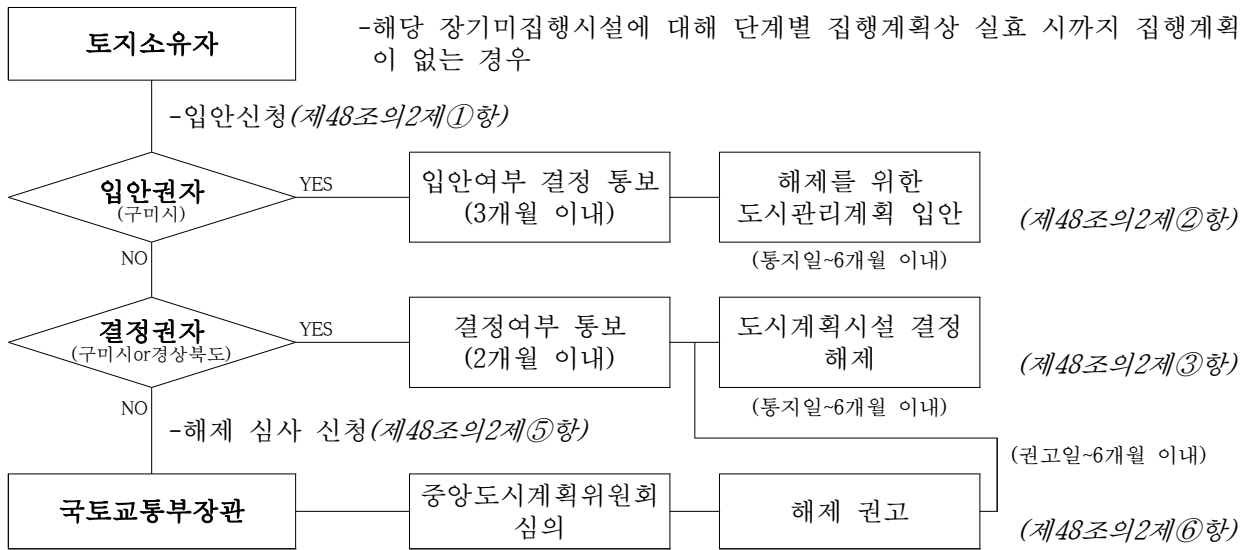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실효대상현황		
								(10년이상)		(2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계		4,767	64,005,682	3,404	44,538,038	1,363	19,467,644	580	16,554,379	397	13,738,747	
교통 시설	계		3,720	20,498,387	2,575	17,283,466	1,145	3,214,921	495	1,931,907	335	804,834
	도로	광로	4	987,114	4	987,114	-	-	-	-	-	-
		대로	95	6,739,216	76	6,075,228	19	663,988	15	632,768	9	132,021
		중로	685	8,169,072	502	6,876,233	183	1,292,839	84	745,334	33	276,980
		소로	2,772	3,878,110	1,885	2,704,546	887	1,173,564	389	521,176	291	370,993
	철도		2	267,151	2	267,151	-	-	-	-	-	-
	주차장		155	305,560	101	245,870	54	59,690	5	7,789	-	-
	자동차정류장		7	152,164	5	127,324	2	24,840	2	24,840	2	24,840
	공간 시설	계		701	21,562,416	497	7,059,833	204	14,502,583	76	13,121,661	57
광장		22	1,121,890	19	1,051,261	3	70,629	3	70,629	3	70,629	
공원		293	16,524,139	186	2,885,873	107	13,638,266	45	12,365,651	32	10,748,599	
녹지		369	3,455,428	281	2,664,029	88	791,400	28	685,381	22	663,270	
공공공지		16	15,234	10	12,946	6	2,288	-	-	-	-	
유원지		1	445,725	1	445,725	-	-	-	-	-	-	
유통 공급 시설	계		90	802,033	89	771,191	1	30,842	-	-	-	-
	수도공급설비		36	498,052	36	498,052	-	-	-	-	-	-
	전기공급설비		39	80,919	39	80,919	-	-	-	-	-	-
	유류저장및송유설비		1	-	1	-	-	-	-	-	-	-
	방송·통신시설		1	23,859	1	23,859	-	-	-	-	-	-
	공동구		1	6,863	1	6,863	-	-	-	-	-	-
	시장		12	192,340	11	161,498	1	30,842	-	-	-	-

구분		결정현황		집행현황		미집행현황		장기미집행현황		실효대상현황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년이상)		(20년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계	169	7,193,353	162	7,098,921	7	94,432	6	79,396	2	30,000
	학교	127	3,376,447	122	3,302,079	5	74,368	4	59,332	2	30,000
	공공청사	14	164,956	14	164,956	-	-	-	-	-	-
	문화시설	6	273,594	6	273,594	-	-	-	-	-	-
	체육시설	12	3,263,296	10	3,243,232	2	20,064	2	20,064	-	-
	연구시설	1	45,285	1	45,285	-	-	-	-	-	-
	사회복지시설	9	69,775	9	69,775	-	-	-	-	-	-
방재 시설	계	48	12,037,463	42	10,412,597	6	1,624,866	3	1,421,415	3	1,421,415
	하천	27	11,623,691	22	10,004,405	5	1,619,286	3	1,421,415	3	1,421,415
	유수지	21	413,772	20	408,192	1	5,580	-	-	-	-
보건 위생 시설	계	6	512,051	6	512,051	-	-	-	-	-	-
	장사시설	3	443,713	3	443,713	-	-	-	-	-	-
	도축장	1	29,188	1	29,188	-	-	-	-	-	-
	종합의료시설	2	39,150	2	39,150	-	-	-	-	-	-
환경 기초 시설	계	33	1,399,978	33	1,399,978	-	-	-	-	-	-
	하수도	26	249,458	26	249,458	-	-	-	-	-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6	1,090,435	6	1,090,435	-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1	60,085	1	60,085	-	-	-	-	-	-

② 2020년 구미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조서(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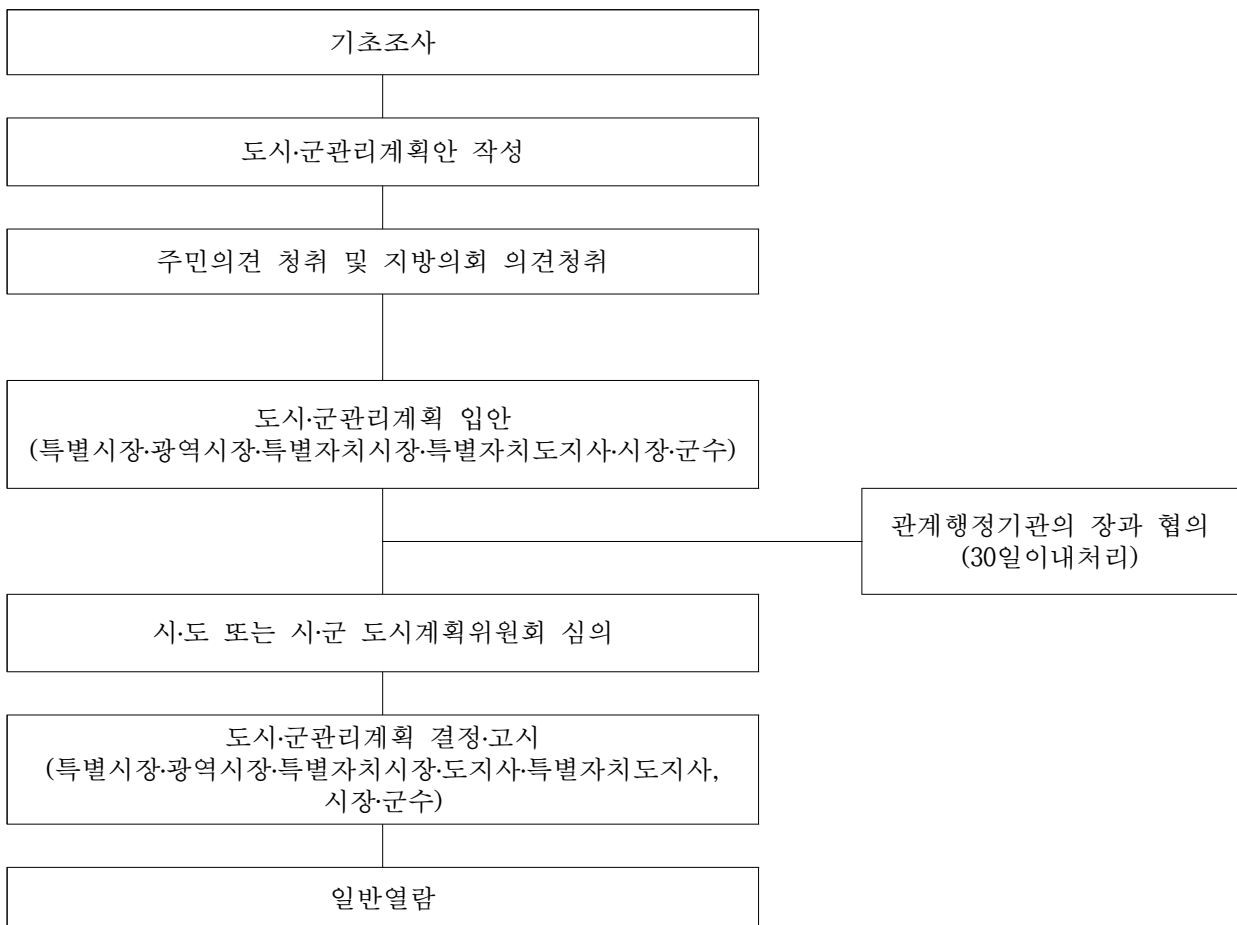
③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절차

○ 해제 신청 업무 흐름도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 제5장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 절차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목개정 2012. 4. 10.]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 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④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⑤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